예 산 총 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761,998,004	22,859,940
일반회계		647,315,605	19,419,468
특별회계		114,682,399	3,440,472
	공기업특별회계	26,907,090	807,213
	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	26,907,090	807,213
	기타특별회계	87,775,309	2,633,259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89,295	17,679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44,875	4,346
	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1,200,101	36,003
	수질개선특별회계	85,841,038	2,575,231

- 제 2조 세입.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.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.
- 제 4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조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580,3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6,4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